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최은석・이성권・유동수

김위상 · 장동혁 · 안상훈

박충권 · 김성원 · 고동진

이인선 • 구자근 • 김희정

신동욱 • 이상휘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 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 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반해, 철도 주변 주민들은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그동안 피해방지대책 지원 및 정당한 보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방지대책 및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정 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 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안 제7조제1항).
- 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철도소음대 책 사업 및 주민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효율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철도소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하 "철도"라 한다)로부터 발생하는소음을 말한다.
- 2. "소음대책지역"이란 철도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3. "철도운영자"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 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한다.
- 4.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를 말한다.
- 5. "철도소음대책사업"이란 철도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의 사업을 말한다.

- 6.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8. "소음영향도"란 철도 운행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소음의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의 철도소음대책 사업과 거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자 및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철도소음으로 인한 철도주변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철도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 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철도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시설물의 용도변경
 -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 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철도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철도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 2. 철도소음 저감 방안
- 3. 철도소음대책사업
- 4. 철도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사업
-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철도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철도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음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철도운영자로 한정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철도운영자로 한정한다)
 -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 5. 그 밖에 철도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 ③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철도

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철도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 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제11조(보상금 지급 및 신청절차 등) 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철도운영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 행자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

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 액을 다투는 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제2항 중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철도운영자·사업시행자"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상금의 지급)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철도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하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 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 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④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⑥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 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 위원회를 둔다.
 - 1. 철도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2. 철도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3. 철도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5.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철도소음대책사업 및 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철도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자금) ①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

- 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 1. 정부의 국고지원금
- 2.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 운임·요금 등 철도를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1. 철도소음대책사업
- 2. 소음피해 보상금
- 3. 주민지원사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 제22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

- 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22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23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철도운영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 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